인지세 납부 안내문

■ 인지세 안내

•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I) 계약서(발코니 확장)은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해당 인지세를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추가선택품목(I) 계약서(발코니 확장)의 해당 인지세를 각각 납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과세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I) 계약서[발코니 확장]
납부기한	계약일(분양권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방문발급	우체국,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신분증 지참, 현금결제만 가능)
온라인 발급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인지세 납부 안내(공동주택)

구분	분양계약서	비고
인지세액	150,000	공급금액 1억원~10억원 이하
사업주체 부담액	75,000	
분양계약자 부담액	75,000	

■ 인지세 납부 안내(발코니 확장)

구분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 확장)	비고
인지세액	20,000	공급금액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사업주체 부담액	10,000	
분양계약자 부담액	10,000	

※ 계약자께서는 정부수입인지를 위 와 같이 공동주택 및 발코니 확장 각 1부 발급하셔야 합니다.(공동주택 및 발코니 확장의 인지세액 합산하여 발급 불가)
※ 상기와 같이 분양계약자와 부담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안내

❶ 해당 홈페이지 접속(www.e-revenuestamp.or.kr) 또는 인터넷 검색창 “전자수입인지” 검색

❷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❸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❹ 납부정보 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및 금액
  1)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75,000원
  2) 도급 또는 위임 : 10,000원
- 건수 : 각 1건(총 2건)
※ 확인 후 결제

❺ 출력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DL E&C